

	산학협력단 장학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09. 9. 1.
		최종개정일자	2011. 1. 7.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정지원 보조사업과 관련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학금 종류) 이 규정에서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장학금 수여자를 제외한 차상위 대상자
2.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 가.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자 또는 자녀 (동사무소 발급 증명으로 확인)
 - 나. 가정경제 곤란자 및 자녀 (첨부 1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판단)
 - 다. <삭제>
3. 전산정보화자격취득 장학금 :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4. 외국어고득점 장학금 : 800점 이상 해외연수, 800점 미만 차등지급
5. 면접클리닉, 자기소개서선발 장학금 : 면접클리닉 평가표상 90점이상자 선발지급
6. 경진대회 장학금
7. 지도교수 추천
8. 봉사활동장학금 : 사회활동 및 다문화사업 봉사활동 우수학생

제3조의 2(대상) 정원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 3(학과별 배분절차) ①정원 내 총학생대비로 장학 수혜액을 산출한다.

- ② 학과별 등록 고지액에 대한 균등 조정한다.
- ③재학율, 이탈율 등 학생관리 상태에 따른 관리 성과급제를 적용하며, 그 비율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3조의 4(학년별 배분) 학과별 장학수혜액의 학년별 배분은 2년제 학과일 경우 1학년은 60%, 2학년은 40%로 하고 3년제 학과일 경우 1학년은 50%, 2학년은 30%, 3학년은 20% 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 5(증빙서류 등) 제 3조 2항의 대상자는 첨부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6(지급최고액) ①제 3조 ①에 해당자는 당해 학기 등록 고지액의 70% 이내

- ②제 3조 ②에 해당자는 당해 학기 등록 고지액의 50% 이내
- ③제 3조 1항 및 7항 해당자는 당해 학기 등록 고지액의 25% 이내 (단, 제3조 ②에 대한 추천일 경우 50%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의 7(지급한도) ①본 장학금을 포함하여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각종 장학금의 총계

가 등록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타 장학금 수혜자일 경우 등록고지액과 외부장학수혜총액(교내지급장학금포함)의 차액만큼 지급 가능하되 ①항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조의 8(지급산정 순위) ①교내외 장학금 수혜

②정부보조사업 장학금 수혜

제3조의 9(지급방법)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거나, 지급예정액 이상 분납한 학생으로 수혜 대상자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장학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별도 구성없이 정부보조사업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장학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장학금 지급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③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④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의 기준) 이 규정 제3조에 정한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위원회에서 지급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 추천) 각종 장학금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하여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추천한다.

제9조(장학생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계곤란자) 판단 서류

※공통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서류	
편부모가정의 자녀, 소년 소녀 가정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등본
부모가 장애우인 장애가구 학생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등본, 장애인 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의 재학생 학생	재원증명서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학과장이 가계곤란자 판단되는자	주민등록, 추천사유서
기타(천재지변에 의한 생계곤란자등)	객관적인 확인서(읍면동)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지역, 직장 건강보험료 동일)

월39,000원(3인이하) ~ 월48,000원(6인이상) 이하 납부자 자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이상
건강보험료금액	39,000원 이하	42,000원 이하	45,000원 이하	48,000원 이하

* 정부보조사업이 정원 내 학생으로만 지원되므로
장학생선발 시 정원 내 학생만 추천하여 주십시오.

[첨부 2]

()학과 장학관련 회의록			
안건			
일시		장소	
협의 내용			
발표자	내 용	비 고	
결정사항 :			
참석자 명단 상기와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첨부 4]

()학과 학년 20 학년도 성적우수 장학생 신청서							
순번	학년		은행 - 계좌번호	성적 등위	비 고		
	성 명	신청액			정원내확인	장학수혜액	등록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교학처확인		사무처확인 *분납자는 현재 분납등록액이 청구액보다 많아야 함.
<p>- 신청액은 등록고지액의 25% 이내</p> <p>- 신청대상자에 대한 학년배분</p> <p><input type="checkbox"/> 3년제 (1학년: 50%, 2학년 30%, 3학년 20%)</p> <p><input type="checkbox"/> 2년제 (1학년: 60%, 2학년 40%)</p>							
<p>()과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이상과 같이 20 학년도 학기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과 학과장 : (인)</p>							
<p>첨부서류 : 1. 가계곤란 증빙서류</p> <p style="padding-left: 40px;">2. 학과별 장학관련 회의록 - 배포서식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첨부 5]

()학과 20 학년도 학과 지도교수추천 장학생 신청서						
순번	학년		은행 - 계좌번호	비 고		
	성 명	신청액		정원내확인	장학수혜액	등록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교학처확인		사무처확인 *분납자는 현재 분납등록액이 청구액보다 많아야 함.
* 개인별 사유서 첨부						
-신청액 : 등록고지액의 50%이내 -가계곤란 증빙서류 및 추천 사유서(지도교수 개별) -학과 교수 협의록 - 배포서식 사용						
()과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이상과 같이 20 학년도 학기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과 학과장 : (인)						
첨부서류 : 1. 가계곤란 증빙서류 2. 학과별 장학관련 회의록 - 배포서식사용						
20 년 월 일						

[첨부 5]

()학과 지도교수 추천 장학관련 회의록			
안건			
일시		장소	
협의 내용			
발표자	내 용	비 고	
결정사항 :			
참석자 명단 상기와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함. 20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첨부 6]

()학과 지도교수 장학 추천서					
성명		학년		학번	
추천 사유					
상기의 내용과 같이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인 : 교수			(서명)		